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28
		개정일자	2023.08.01
	소음진동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1 / 4

□ 목 차 □				
1. 적용범위 2. 목 적 3. 관련 법규 4. 용어의 정의 5. 책임과 권한 6. 업무 절차 7. 기록 관리 8. 관련 문서				
0	2023.08.01	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		
구 분	작 성 자	검 토 자		승 인 자
부서명 / 직책	안전환경관리부 주 임	안전환경관리부 부 장		대 표 이 사
성 명	공 도 현	김 병 후		이 수 대
서 명				
일자(년/월/일)	2023/08/01	2023/08/01		2023/08/01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28
		개정일자	2023.08.01
	소음진동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2 / 4

1. 적용 범위

시공 및 공사관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원인분석, 정도의 측정, 대책방안 수립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현장을 유지함에 목적으로 한다.

2. 목적

이 지침서는 당사의 사업 활동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측정 및 점검, 관리하기 위한 제반 업무 절차 및 책임과 권한에 적용한다.

3. 관련 법규

- 3.1. 소음진동관리법
- 3.2.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
- 3.3.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

4. 용어의 정의

- 4.1. 소음
시공에 관련된 건설기계 및 차량 등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리
- 4.2. 진동
시공에 관련된 건설기계 및 차량 등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
- 4.3. 소음진동방지시설
소음을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방음 덮개, 방음벽, 흡음 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4.4.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
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음, 진동이 주위 환경에 배출될 때의 배출기준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다.
- 4.5. 관할기관
소음, 진동 관련 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기관으로 각 현장에 따르는 도청, 시청 등의 기관을 말한다.
- 4.6. 소음, 진동 측정
소음,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측정 주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 또는 지자체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.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28
		개정일자	2023.08.01
	소음진동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3 / 4

5. 책임과 권한

5.1. 현장소장

- 1) 소음 진동 대책방안 승인
- 2) 현장 환경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상의 승인
- 3) 소음 진동 환경점검표 승인

5.2. 총무(총무 업무 담당자)

- 1) 소음 진동 발생 여부 파악 및 대책방안 수립
- 2) 소음 진동 환경점검표 실행
- 3) 현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상 검토 및 점검
- 4) 현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업무
- 5) 소음 진동 환경점검표 작성

6. 업무절차

6.1. 일반사항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에 적용해야 할 환경관리 대상과 범위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식별해야 한다.
 - (1)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 시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의 각 환경측면 개선계획
 - (2) 현장 실착공 후 시행된 **환경측면관리프로세스**에 의한 **환경영향평가** 결과
 - (3) **법규관리 및 준수 의무** 규정에 따른 첨부된 환경 법규등록 대장
- 2) 현장소장은 식별된 환경관리 대상측면에 대해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.
 - (1)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"**품질경영·안전보건경영·환경경영 매뉴얼**"의 "**운영관리 규정**"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
 - (2)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**목표관리** 규정에 따른 환경 목표 추진계획 수립
- 3) 소음 진동 사전 신고
 - (1)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.
 - (2) 특정공사에 해당하면 공사개시 3일 전까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, 도지사에게 제출한다.
 -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
 - 공사장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표지)
 - 방음, 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
 - 기타 소음 진동 저감 대책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28
		개정일자	2023.08.01
	소음진동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4 / 4

4)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

(1)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인허가

- 현장소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하로 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방지시설의 설치(변경)는 사업자 스스로 또는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본사로 요청한다.
- 현장소장은 해당 관청에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인,허가를 받는다.

6.2. 환경점검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(총무)를 선정하여 환경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2) 현장 관리자(총무)는 매일 1회 순회점검을 환경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별도 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처리하고 기록한다.
- 3) 발견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부적합을 처리하고 관련 조치란에 부적합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.
- 4) 우기 혹은 특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점검을 상기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점검결과란 중 빈칸에 기록한다.

7. 기록 관리

- 7.1.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(HW-QESHP-751)에 따른다.

기록문서	관리부서	양식번호	보존기한
환경 점검표	안전환경관리부	HW-환경-003	3년

8. 관련문서

- 8.1. 목표관리 규정
- 8.2. 환경운영관리 규정
- 8.3. 법규관리 및 준수 의무 규정
- 8.4. 환경측면 영향평가 규정
- 8.5. 지속적개선 규정
- 8.6. 품질매뉴얼
- 8.7. 안전보건, 환경 매뉴얼